

# 예 산 총 칙

202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05,373,137	24,161,194
일반회계	558,000,000	16,740,000
특별회계	70,189,725	2,105,692
기타특별회계	70,189,725	2,105,692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862,425	25,873
주차장특별회계	358,000	10,74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046,292	61,38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5,588,060	1,067,642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395,740	11,872
치수사업특별회계	351,208	10,53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500,000	15,000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30,000,000	900,000
비행장소음대책지원 특별회계	88,000	2,640
기금	177,183,412	5,315,502
재난안전기금	2,373,708	71,211
농어업발전기금	8,103,032	243,091
공무원주거안정기금	832,000	24,960
자활기금	708,799	21,264
식품진흥기금	151,033	4,531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54,952,629	4,648,579
울진군신청사건립기금	10,002,211	300,066
옥외광고발전기금	60,000	1,8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500,000천원으로 한다.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310,174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1,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을 상호 이용할 수 있다.